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53호 2024. 8. 12.(월)

고시・공고

\bigcirc	목포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공인 폐기 공고	
\bigcirc	목포시 스토킹 예방지침 제정 발령	11
\bigcirc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급 사업 신청	23
\bigcirc	공인 등록 공고	33
	훈 경	
\bigcirc	목포시 공무 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 발령	34

회람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목포시 고시 제2024-112호

목포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6항 개정에 따라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청소년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7일

목 포 시 장

- 1. 지정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보호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에 기여
- 2. 지정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개정)
- 3. 지정일자: 2024. 8. 17.
- **4. 지정대상**: **246**개소(어린이집 132, 유치원 48, 학교 6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5. 지정범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 향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신설·폐업(폐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 및 해제
- 6.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시기: 2024. 8. 17.부터
 - 과태료 부과 금액: 10만원
- 7. 고시방법: 목포시청 홈페이지 및 시보
-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1-270-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금연구역 지정 현황

□ 어린이집(132개소)

연번	명 칭	주 소	
1	(사)목포YWCA어린이집	목포시 백년대로337번길 29	
2	가온어린이집	목포시 영산로535번길 6 101동 101호(상동, 호반리젠시빌)	
3	개미어린이집	목포시 상동로 50 (상동)	
4	골드9차어린이집	목포시 연산백련로1번길 111 관리동(연산동,골드클래스9차아파트)	
5	골드키즈어린이집	목포시 남악1로16번길 10 골드클래스아파트단지내 (옥암동)	
6	구름요정어린이집	목포시 원산중앙로 109-1 501동 104호(연산동, 연산주공5단지	
7	구생어린이집	목포시 통일대로75번길 14 101호, 201호, 301호 (옥암동, 부영아파트)	
8	그린영재어린이집	목포시 텃골로13번길 40 석현동,근화네오빌 106동 101호	
9	근화어린이집	목포시 용해로6번길 11 (용당동)	
10	글로벌유아스쿨어린이집	목포시 삼각로 17 (상동)	
11	꼬마숲어린이집	목포시 용당로331번길 16-1	
12	꿈꾸는어린이집	목포시 남악1로16번길 43-14 옥암동 코아루천년가 105동 106호	
13	꿈나무어린이집	목포시 상동로21번길 65	
14	다솜어린이집	목포시 당가두로13번길 7 110동 104호(옥암동, 옥암부영사랑으로1차아파트)	
15	다윗어린이집	목포시 청호로 206 신안팔레스 104동 103호	
16	도담어린이집	목포시 백년대로307번길 24 (상동)	
17	동민어린이집	목포시 용당로284번길 26 (용해동)	
18	동화마을어린이집	목포시 텃골로 19 203동 107호(석현동, 근화네오빌여유당2차아파트)	
19	동화코코어린이집	목포시 청호로 210 신안비치팔레스 113동 103호	
20	라송5차어린이집	목포시 영산로 648-24 단지내 관리동(석현동, 라송센트럴카운티5차아파트)	
21	라송어린이집	목포시 청호로136번길 22 라송센트럴카운티2차	
22	리틀 어린이집	목포시 삼향천로 113 202동107호 (옥암동 우미2차)	
23	리틀키즈어린이집	목포시 당가두로13번길 7 105동 101호(옥암동, 옥암부영사랑으로1차아파트)	
24	목포경찰서어린이집	목포시 동명로 124 목포경찰서어린이집	
25	미소천사 어린이집	목포시 원산중앙로 87 303동 105호(연산동, 연산주공3단지)	
26	민족사관어린이집	목포시 정의로 26-14	
27	백제어린이집	목포시 옥암로 165 202동 101호(상동, 광명샤인빌2차)	
28	베베숲 어린이집	목포시 남악1로52번길 83 103동 102호(옥암동, 근화베아체)	
29	베아채사임당 어린이집	목포시 남악1로52번길 83 옥암베아채아파트	
30	베키어린이집	목포시 삼향천로 84 (옥암동)	
31	별아이어린이집	목포시 영산로535번길 6 105동 106호(상동, 호반리젠시빌)	
32	보물섬어린이집	목포시 양을로 91 102동 101호(산정동, 일신)	

33	ㅂㄹ비 시리시지		
	블루빌 어린이집	목포시 텃골로13번길 26 303동 107호(석현동, 근화블루빌)	
34	비전어린이집	목포시 통일대로37번길 33 하당현대아파트 보육시설동	
35	빌리앙뜨어린이집	목포시 옥암로 174 빌리앙뜨103-104	
36	빛과소금영아전담어린이집	목포시 온남길3번길 23-6	
37	뽀로로붐어린이집	목포시 삼학로 363 105동 101호(용해동, 신안인스빌아파트)	
38	뿡뿡이어린이집	목포시 하당로213번길 3 (상동)	
39	삐아제 어린이집	목포시 양을로 39-1	
40	사과나무어린이집	목포시 백년대로375번길 30 205동 101호(옥암동, 하당금호2차아파트)	
41	사랑가득어린이집	목포시 영산로 607 107동 106호(석현동, 우진아트빌)	
42	사랑나무어린이집	목포시 당가두로13번길 35 201동 102호(옥암동,부영애시앙)	
43	사랑의교회어린이집	목포시 복산길6번길 7 (옥암동)	
44	사랑채움 어린이집	목포시 남악1로52번길 83 105동105호(옥암동, 근화베아체)	
45	사회복지법인 명도어린이집	목포시 하당로214번길 18 (상동)	
46	사회복지법인 뽀뽀뽀 어린이집	목포시 고하대로652번길 12 (산정동)	
47	사회복지법인 온유복지재단 또래어린이집	목포시 다순구미로 18-1	
48	사회복지법인 청운어린이집	목포시 연산로124번길 4-6	
49	사회복지법인 행복한복지재단 대양어린이집	목포시 대박길63번길 33 (대양동)	
50	사회복지법인백합어린이집	목포시 용당로15번길 24 (산정동)	
51	사회복지법인 신나는복지재단 신나는어린이집	목포시 관해로16번길 18 (용해동)	
52	사회복지법인에덴어린이집	목포시 돌산길28번길 10 (산정동)	
53	사회복지법인중앙어린이집	목포시 터진목로21번길 20 (산정동)	
54	사회복지법인희망어린이집	목포시 중화길13번길 9 -1	
55	산들아이어린이집	목포시 양을로 42 104동 104호 (대성LH 천년나무 아파트)	
56	삼성어린이집	목포시 백년대로412번길 20 (옥암동)	
57	새꿈담는우리어린이집	목포시 원산주택로 10-1	
58	샛별어린이집	목포시 원산정로 9 (산정동)	
59	샤론어린이집	목포시 하당로 12 신안꿈동산아파트 단지내	
60	서남장애어린이집	목포시 신죽길30번길 14-5 서남장애어린이집 (죽교동)	
61	서해지방해양경찰청어린이집	목포시 남악로162번길 25	
62	서희어린이집	목포시 영산로 719-29 단지내 (석현동, 서희스타힐스)	
63	성균관어린이집	목포시 남악1로42번길 5 (옥암동)	
64	성덕어린이집	목포시 북항로 109	
65	솔로몬어린이집	목포시 석현마을길 3 (석현동)	
66	숲속친구 어린이집	목포시 영산로565번길 23 상동 광신프로그래스 내	
67	스마일어린이집	목포시 부흥로 12 106동 103호(상동, 삼성)	
68	스트로베리어린이집	목포시 용해지구로88번길 23 509동1층(용해동, 골드디움5차)	

69	시립옥암주공2차어린이집	목포시 남악1로52번길 35-8
70	신안팔레스어린이집	목포시 청호로 210 신안비치팔레스 관리동
71	아기나무어린이집	목포시 하당로289번길 6 301동 103호(옥암동, 제일하이빌3차아파트)
72	아기천사어린이집	목포시 영산로 610 104동 103호(석현동, 대성사랑으로아파트)
73	아델리움어린이집	목포시 삼향천로 159 단지내 관리동(옥암동, 옥암3차 한국아델리움센트럴)
74	아띠모아어린이집	목포시 남악2로22번길 58 108동 104호(옥암동, 모아엘가아파트)
75	아마데우스어린이집	목포시 영산로 610 103동 106호(석현동, 대성사랑으로아파트)
76	아이꿈터어린이집	목포시 청호로219번길 51 신안실크밸리7차아파트 703동 1층
77	아이조아어린이집	목포시 남악2로52번길 5-5
78	아인슈타인어린이집	목포시 하당남부로 25 113동 102호(상동, 꿈동산신안1차아파트)
79	아해누리유아스쿨어린이집	목포시 관해로5번길 22 (용해동)
80	아해뜰어린이집	목포시 관해로5번길 34 (용해동)
81	애플펀어린이집	목포시 안장산로 40 (용해동)
82	어울림어린이집	목포시 텃골로33번길 53 석현동 금호어울림아파트105동101호
83	엄마사랑어린이집	목포시 평화로107번길 16 605동 107호(옥암동, 우미오션빌아파트)
84	에벤에셀 어린이집	목포시 청호로 210 111동 101호(산정동, 신안비치팔레스)
85	엔젤 어린이집	목포시 교육로 81 엔젤 어린이집 (상동)
86	엘가어린이집	목포시 남악2로22번길 58 (옥암동)
87	엘리트어린이집	목포시 신흥로 29 108동 103호(상동, 동아)
88	연산골드어린이집	목포시 산정로 308 (연산동,연산골드클레스8차 관리동)
89	연산어린이집	목포시 원산로145번안길 3-4
90	열린어린이집	목포시 산정로47번길 5 (산정동)
91	예원어린이집	목포시 원산중앙로 87
92	예지원 어린이집	목포시 삼학로 363 101동 103호(용해동, 신안인스빌아파트)
93	예향어린이집	목포시 도룡길 51-1 예향어린이집 (석현동)
94	왕자와공주어린이집	목포시 신흥로 111 203동 101호(옥암동, 제일하이빌2차아파트)
95	용해5단지어린이집	목포시 양을로 249 (용해동)용해5단지 행복주택아파트)
96	월드어린이집	목포시 통일대로119번길 13 (옥암동)
97	일어서는장애아전담어린이집	목포시 산계길 72 (대양동)
98	자연생태어린이집	목포시 지적로 20 (대양동)
99	자연숲어린이집	목포시 백년대로200번길 9 (용해동)
100	작은도화지어린이집	목포시 텃골로13번길 26 305동 102호(석현동, 근화블루빌)
101	잼잼어린이집	목포시 원산로145번안길 12 (연산동)
102	좋은나무어린이집	목포시 연산백련로1번길 79
103	천년가 어린이집	목포시 남악1로16번길 43-14 천년가아파트 관리동
104	천년나무어린이집	목포시 양을로 42 LH천년나무아파트 내
105	천년숲어린이집	목포시 양을로 42 107동 103호 (대성LH 천년나무아파트)

106	청록어린이집	목포시 삼향천로91번길 21 201동 101호(옥암동, 현대아이2차아파트)
107	청솔어린이집	목포시 당가두로13번길 8 107동 103호(옥암동, 코아루)
108	카리타스어린이집	목포시 고하대로 712 (산정동)
109	클래스어린이집	목포시 연산백련로 22 골드클래스 7차 내 (관리동)
110	클아이어린이집	목포시 삼학로 363 신안인스빌 아파트 단지내 노인정 2층 (용해동)
111	키즈빌어린이집	목포시 용해지구로88번길 7 천년가맘스카운티아파트 단지내 관리동
112	태화어린이집	목포시 용당국민로 7 (용당동)
113	토끼어린이집	목포시 청호로 210 103동 101호(산정동, 신안비치팔레스아파트)
114	토리어린이집	목포시 용당로331번길 40 208동 104호(용해동, 용해호반리젠시빌스위트)
115	토마토어린이집	목포시 대양로81번길 6 (연산동)
116	팅커벨어린이집	목포시 백년대로375번길 30 201동 104호(옥암동, 하당금호2차아파트)
117	팔레스어린이집	목포시 청호로220번길 5 112동 102호(산정동, 신안비치팔레스아파트)
118	포미노랑어린이집	목포시 포미로 22 포미타운주공2차 관리동
119	포미타운4단지 어린이집	목포시 용해지구로88번길 24 포미타운4단지관리동
120	푸르지오어린이집	목포시 남악1로 51 푸르지오 아파트 관리동1층 (옥암동)
121	풍경채어린이집	목포시 석현로25번길 9 하당풍경채 어바니티아파트 관리동
122	프로그레스어린이집	목포시 백년대로 147 단지내 관리동(용해동, 용해동 광신프로그레스)
123	하나둘셋가정어린이집	목포시 신흥로 93 101동 107호(옥암동, 하당초원2차아파트)
124	하늘바람어린이집	목포시 용해지구로88번길 8 용해6차 골드디움 아파트 단지내 보육시설
125	하당중흥S클래스어린이집	목포시 비파로 96
126	한마음영아전담어린이집	목포시 하당로197번길 2 (상동)
127	한빛어린이집	목포시 비파로 99 (상동)
128	한사랑가베어린이집	목포시 신흥로 13 우성아파트 109동 101호 6/4 (상동)
129	해늘어린이집	목포시 양을로7번길 8 (죽교동)
130	행복주택어린이집	목포시 연산백련로1번길 51 관리동어린이집
131	현대어린이집	목포시 상동로 33 현대아파트 단지내 현대어린이집
132	휴먼시아 어린이집	목포시 당가두로38번길 11 106동 1층(옥암동, 옥암주공1단지아파트)

□ 유치원(48개소)

연번	명 칭	주 소
1	가나유치원	목포시 산정로238번길 68 (용당동)
2	노블키즈유치원	목포시 하당로312번길 9 (옥암동)
3	노엘유치원	목포시 지적로42번길 43 (대양동)
4	목포새싹유치원	목포시 삼학로 303-3 (용해동, 동아아파트)
5	썸머힐유치원	목포시 영산로 587 (석현동)
6	몬테소리유치원	목포시 영산로692번길 9 (석현동)
7	새봄유치원	목포시 죽산로40번길 24 , 새봄유치원 (산정동, 현대아파트)

8	색동유치원	목포시 신흥로 13 (상동,우성아파트)
9	성심유치원	목포시 노송길 32-6 (산정동)
10	숲속아일랜드유치원	목포시 하당로213번길 10 , 숲속아일랜드유치원
11	엔젤유치원	목포시 양을산길 8 (용해동)
12	이지차일드유치원	목포시 당가두로38번길 4 (옥암동)
13	일오삼유치원	목포시 원산중앙로 110 (연산동)
14	즐거운유치원	목포시 백년대로337번길 33 (상동)
15	한나숲유치원	목포시 부흥로 102 (옥암동)
16	해바라기유치원	목포시 양을로41번길 40 (산정동)
17	희망유치원	목포시 부흥로 12 (상동)
18	목포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목포시 산정로21번길 22 (호남동)
19	목포대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목포시 청호로 79 (대성동, 대성초등학교)
20	목포대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목포시 용당로 374 (용해동, 목포대연초등학교)
21	목포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목포시 산정로 245 , 목포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산정동)
22	목포미항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목포시 미항로 211 (옥암동)
23	목포백련유치원	목포시 연산백련로31번길 6-8 , 목포백련유치원 (연산동)
24	목포부영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목포시 통일대로75번길 24 ,목포부영초등학교병설유치원(옥암동)
25	목포부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목포시 남악2로22번길 37 , 목포부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옥암동)
26	목포북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목포시 수문로 83 (북교동, 북교초등학교)
27	목포산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목포시 산대로 26 , 목포산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산정동)
28	목포삼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목포시 남해로39번길 8 (산정동)
29	목포상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목포시 상동로21번길 73 (상동, 목포상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0	목포서부유치원	목포시 원산로 27 , 목포서부유치원 (산정동, 목포서부초등학교)
31	목포서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목포시 유달로 28 (서산동)
32	목포서해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목포시 연산로 148 (연산동)
33	목포석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목포시 옥암로186번길 20 , (석현동,석현초등학교) (석현동)
34	목포신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목포시 교육로 10 (상동)
35	목포애향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목포시 당가두로38번길 23 애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옥암동)
36	목포연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목포시 연동로17번길 9 , 목포연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산정동)
37	목포연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목포시 원산중앙로 88 (연산동)
38	목포옥암유치원	목포시 남악1로42번길 60-10 (옥암동, 옥암유치원)
39	목포용해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목포시 포미로 35 (용해동)
40	목포용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목포시 용당로 139 (용당동)
41	목포유달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목포시 영산로10번길 10 (유달동, 목포유달초등학교)
42	목포이로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목포시 이로로9번길 3 (용해동, 목포이로초등학교병설유치원)
43	목포임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목포시 신지마을1길 41 (석현동)
44	목포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목포시 청호로 11 , 목포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호남동, 중앙초등학교)

45	목포청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목포시 옥암로96번길 25 , 목포청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
46	목포하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목포시 백년대로307번길 27 , 목포하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47	목포한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목포시 교육로66번길 22 , (상동, 목포한빛초등학교)
48	목포항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목포시 텃골로33번길 94-8 (상동,목포항도초등학교)

□ 학교(66개소)

연번	명 칭	주 소		
1	광주교육대학교목포부설초등학교	목포시 안태길 13 (용해동)		
2	목포남초등학교	목포시 산정로21번길 22 , 목포남초등학교 (호남동)		
3	목포대성초등학교	목포시 청호로 79 (대성동,대성초등학교)		
4	목포대연초등학교	목포시 용당로 374 , 목포대연초등학교 (용해동)		
5	목포동초등학교	목포시 산정로 245 , 목포동초등학교 (산정동)		
6	목포미항초등학교	목포시 미항로 211 (옥암동)		
7	목포백련초등학교	목포시 연산백련로 40 (연산동)		
8	목포부영초등학교	목포시 통일대로75번길 24 , 목포부영초등학교 (옥암동)		
9	목포부주초등학교	목포시 남악2로22번길 37 (옥암동)		
10	목포북교초등학교	목포시 수문로 83 , 목포북교초등학교 (북교동)		
11	목포산정초등학교	목포시 산대로 26 , 목포산정초등학교 (산정동)		
12	목포삼학초등학교	목포시 남해로39번길 8 , 목포삼학초등학교 (산정동)		
13	목포상동초등학교	목포시 상동로21번길 73 (상동,목포상동초등학교)		
14	목포서부초등학교	목포시 원산로 27 (산정동, 목포서부초등학교)		
15	목포서산초등학교	목포시 유달로 28 , 목포서산초등학교 (서산동)		
16	목포서산초등학교충무분교장	목포시 고하도길 91 (달동)		
17	목포서해초등학교	목포시 연산로 148 , 목포서해초등학교 (연산동)		
18	목포석현초등학교	목포시 옥암로186번길 20 (석현동, 석현초등학교)		
19	목포신흥초등학교	목포시 교육로 10 (상동)		
20	목포애향초등학교	목포시 당가두로38번길 23 , 목포애향초등학교 (옥암동)		
21	목포연동초등학교	목포시 연동로17번길 9 (산정동)		
22	목포연산초등학교	목포시 원산중앙로 88 , 목포연산초등학교		
23	목포영산초등학교	목포시 남악1로16번길 25 , 목포영산초등학교 (옥암동)		
24	목포옥암초등학교	목포시 남악1로52번길 68-3 (옥암동)		
25	목포용해초등학교	목포시 포미로 35, 목포용해초등학교 (용해동)		
26	목포용호초등학교	목포시 용당로 139 (용당동)		
27	목포유달초등학교	목포시 영산로10번길 10 (유달동, 목포유달초등학교)		
28	목포유달초등학교달리분교장	목포시 달리길157번길 35 (달동, 유달초등학교달리분교)		
29	목포이로초등학교	목포시 이로로9번길 3 (용해동)		
30	목포임성초등학교	목포시 신지마을1길 41 , 목포임성초등학교		

31	목포중앙초등학교	목포시 청호로 11 (호남동)
32	목포청호초등학교	목포시 옥암로96번길 25 , 목포청호초등학교 (옥암동)
33	목포하당초등학교	목포시 백년대로307번길 27 , 목포하당초등학교 (상동)
34	목포한빛초등학교	목포시 교육로66번길 22 , 목포한빛초등학교 (상동)
35	목포항도초등학교	목포시 텃골로33번길 94-8 (상동)
36	목포애향중학교	목포시 남악2로22번길 28-7 (옥암동)
37	목포여자중학교	목포시 유동로 35 (경동2가)
38	목포옥암중학교	목포시 남악1로42번길 59-6 (옥암동,옥암중학교)
39	목포유달중학교	목포시 산정로 171 (산정동,목포유달중학교)
40	목포제일중학교	목포시 삼학로 277 (용해동)
41	목포중앙여자중학교	목포시 백년대로280번길 24 (상동)
42	목포청호중학교	목포시 연산백련로31번길 , 15 (연산동)
43	목포하당중학교	목포시 삼향천로 119 (옥암동)
44	목포항도여자중학교	목포시 상동로21번길 111 (상동,목포항도여자중학교)
45	목포덕인중학교	목포시 죽선로 39-2 , 목포덕인중학교 (죽교동)
46	목포영화중학교	목포시 영산로 413-2 (상동)
47	목포정명여자중학교	목포시 삼일로 45 ,목포정명여자중학교(양동)
48	목포혜인여자중학교	목포시 죽선로 39-2 (죽교동)
49	목포홍일중학교	목포시 북항로 88 , 홍일중학교 (죽교동)
50	문태중학교	목포시 용당로 138 , 문태중학교(행정실) (용당동)
51	영흥중학교	목포시 삼각로43번길 9 , 영흥중학교 (상동)
52	목상고등학교	목포시 소영길 13 (용당동)
53	목포고등학교	목포시 산정로224번길 11 (용당동)
54	목포공업고등학교	목포시 용당로 100 (용당동, 목포공업고등학교)
55	목포여자고등학교	목포시 청호로 34 , 목포여자고등학교 (대성동)
56	목포제일여자고등학교	목포시 삼향천로 85 , 목포제일여자고등학교 (옥암동)
57	목포덕인고등학교	목포시 죽선로 39-2 , 목포덕인고등학교 (죽교동)
58	목포마리아회고등학교	목포시 양을로 229 , 목포마리아회고등학교 (용당동)
59	목포성신고등학교	목포시 상동로 87-1 , 목포성신고등학교 (상동)
60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목포시 영산로 413-3 (상동)
61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	목포시 삼일로 45 (양동,정명여자고등학교)
62	목포중앙고등학교	목포시 지적로 36 (대양동)
63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목포시 죽선로 39-2 ,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64	목포홍일고등학교	목포시 북항로 88 목포홍일고등학교 (죽교동)
65	문태고등학교	목포시 용당로 138 , 문태고등학교 (용당동)
66	영흥고등학교	목포시 삼각로43번길 9, 영흥고등학교 (상동)

목포시 공고 제 2024 - 1178호

공인의 폐기 공고

목포시 공인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유 : 미사용에 따른 공인 폐기

2. 폐기일 : 2024. 8. 05.(월)

3. 수 량 : (폐기) 1개

4.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 인 명	인 영	규격	비고
폐기	목포시 연동민원전용계		3.0cm*1.0cm	

2023년 8월 6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예규 제37호

「목포시 스토킹 예방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한다.

2024년 8월 12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스토킹 예방지침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소속 구성원 (시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 이에 준하는 관계인을 포함),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제 3자에게 적용된다.
-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4조(스토킹 예방 교육) 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스토킹 예방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 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 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 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스토킹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1. 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
- 2. 스토킹의 특성, 징후 및 사례
- 3. 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 4.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 5.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6. 민원인, 고객 등 업무관련성 있는 제3자에 의한 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대처 방안
- 7. 그 밖에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④ 시장은 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인터넷 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5조(고충상담창구 등) ① 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기존의 고 충처리부서에 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처리업무 담당자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고충상담 창구는 기존 고충상담창구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고충상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 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며, 성희롱 등 고충상담원이 이를 겸할 수 있다.
-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 2. 스토킹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 및 처리
- 3.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의 검토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부서 간 협조·조 정에 관한 사항
- 4. 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5. 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 6.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그 밖에 스토킹 예방 업무
-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스토킹 고충 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기관의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⑥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제8조의 보호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상급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⑦ 고충상담원은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 2.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 나.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 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 라.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 마. 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 바.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는 행위
- 3. 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 4.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 ⑧ 시장은 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⑨ 스토킹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고충 상담을 받은 상급자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는 피해자에게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충상담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시장은 고충상담원의 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5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스토킹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고충 상담 및 처리) ① 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상담을 접수받은 경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여 스토킹 피해 및 위험의 정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 제8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제8조(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① 시장은 피해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하여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직장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외부전문 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스토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종료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원, 피해 내용 등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⑦ 시장은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조사 등) ① 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스토킹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 과정에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 ⑤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⑦ 스토킹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 ⑧ 고충상담원은 해당 사안이 성희롱·성폭력이나 그 외 직장 내 괴롭힘 등과 복합된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사안 처리 담당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 고,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고충상담원은 스토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불리한 처우 금지 및 비밀유지) ① 시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신고, 협력, 제8조에서 규정한 보호조치를 요구·신청했다는 것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 불이익 조치
-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 ② 시장은 소속 구성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 피해사실을 이유로 또는 제 8조에서 규정한 보호조치를 요구·신청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2차 피해(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시장, 고충상담원 등 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실관계확인 및 사안 처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고충심의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기존에 설치된 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 등 고충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 ④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의 스토킹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 ⑥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내부위원 과 외부위원을 각각 동수(同數)로 구성하여야 한다.
-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시장이 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시장이 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 1. 스토킹의 판단(2차 피해 포함)
-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 4. 그 밖에 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조사 등 결과 통지) 시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징계) ① 시장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시장은 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 발방지 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 처리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스토킹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마런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스토킹이 성희롱·성폭력과 결합된 사건인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통합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스토킹 예방교육, 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스토킹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 ⑥ 시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제17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① 스토킹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상급기관으로 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 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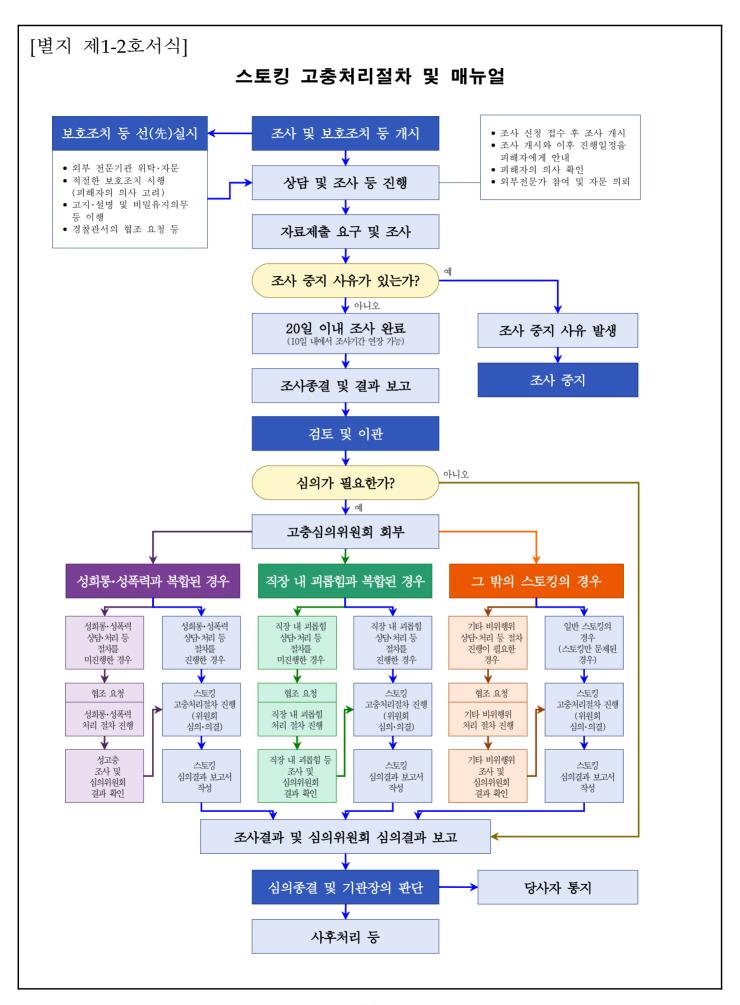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	접수	신기				회신	확	인
번호	일자	성명	소속 부서	고충 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상담원	부서장



[별지 제2호서식]

스토킹 조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담당					처리기간: 신청일로 우 10일			정이 있	는 경
	시키이	성명				소속			직급			
	신청인	성별	남[], 여[]	연락처			E-mail			
rl al al	대리인 ※대리인이	성명				소속			직급			
당사자	신청하는 경우	성별	남[], 여[]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행위자)	성별	남[], 여[]	연락처			E-mail			
신청 취지	※ 문제가	되는 행약	, 지 숙	속성의 여	부,	목격자 즉	0 0	증인의 유무 등을	육하원칙(게 따라 7	기록합니	니다.
요구 사항												
	의 사건처리틑 신청합니다.	를 위한 기	개인 면	<u> </u> 감정보 -	수집	J·이용·제	공 등	에 동의하고, 위외	ት 같이 스 년			의
						신	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약	<u>)</u>])
					Ē	무포시장	귀	Z				

[별지 제3호서식]

조사결과 및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조사 결과

- 3.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1) 스토킹 여부에 대한 판단
 -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목포시장(서명 또는 인)

목포시 공고 제2024-1192호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 공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을 추진 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어업인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8. 8.

목 포 시 장

- 1. 신청기간 : 2024. 8. 12. ~ 9. 6.
- 2. 지원대상 품목: 가리비, 전복
- 3. 신청자격(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1) 어업인등*에 해당하는 자
 - 가. 어업인 : 「수산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자 및 「양식산업 발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
 - 나. 어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 호에 따른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2)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종의 발효일 이전 부터 생산한 자
 - 가. 생산한 자 :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포획·채취·양식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 협정일: 가리비(2022. 2. 1.), 전복(2023. 1. 1.)
- (3)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일부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 가. 일부 위탁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채 취·양식에 필요한 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수산물 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
- (4) 2023년에 지워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5) 2023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및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한 어업정지・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4. 지원기준 : 평균생산량 imes 지급단가 imes 조정계수(수입기여도)
 - (1) 평균생산량 산출기준
 - 가.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 :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 × 신청인이 소유 한 어선의 톤수
 - 나. 양식어업 :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 **실제 양식에 이용된 것으** 로 확인된 면적^{*}
 - * 허가 및 면허 상의 양식장 면적 기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

- ※ 양식어업 생산자가 본인의 평균생산량을 판매영수증을 통해 증빙 가능한 경우, 증빙한 생산량을 인정(해당연도 직전 5년(2018~2022년)간의 생산량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 5. 지급한도: (개인어업인) 3,500만원, (어업법인) 5,000만원
- 6. 지급방법 : 본인 계좌에 입금
- 7. 제출서류
 - (1)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 (2) 관내생산사실확인서 :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의 확인 및 서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지역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함
 - (3) 2023년도 지원대상품목 판매기록(다음 중 하나)
 - 가. 지원대상품목의 2023년도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품목명이 정확히 기재된 수협의 전산출력물 · 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전자 세금계산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
 - 나. 2023년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수산종자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다. 2023년 계약 생산 및 판매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 업체와 어업인 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 라. 2023년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지원대상품목의 2023 년도 생산 및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 증명 서류에 품목명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식신고서로 증빙하는 경우 종자 입식 이후 출하까지 기간을 고려하여 2023년 출하가 입증되어야 함
 - (4)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다음 중 하나)

- 가.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u>품</u> 목명이 정확히 기재된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전자 세금계산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 증, 보관증 등은 제외)
- 나.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수산종자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다.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유통통업체와 어업인 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 라.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 생산 및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마.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5) 통장사본

(6) 관외생산확인서(관내생산 외 2개 이상의 시·도에 관외생산이 있는 경우 각각의 시·도별로 관외생산확인서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함)

8. 접수 및 문의 처 : 목포시청 수산산업과(☎061-270-3672)

- 붙임 1. 2024년도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품목 고시(해양수산부 고 시 제2024-89호)
 - 2.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 3. 관내생산 확인서
 - 4.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 5. 관외생산 확인서

[붙임 1]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89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5항에 따라 2024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4년 08월 01일 해양수산부장관

2024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2024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품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가리비
- 2. 전복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4-89호, 2024.08.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행정규칙의 폐지) 2022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해양수산부고시 제2022-134호)은 폐지한다.

[붙임 2] 지급신청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	성방법을 읽	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보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긴	기간 30 일			
	성명(법	생년월일(법인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품	소재지(시·군, 읍·면, 생산기간 리·동)					(어선톤수(툰 면적(ha))	토) 또
신청내용								
	면허등 번호							
* 어장의 면 [:]	_ 적은 실저	생산에 이용한 시	설면적(수면적) 기재					
	예금주		예금기관	기관				
입금계좌	계좌번	<u> </u>						
시행규칙	제2조제		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 [·] 와 같이 피해보전직접지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구비서	2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	7mm[백상지 8	80g/m²]

구비서류

※ 지원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어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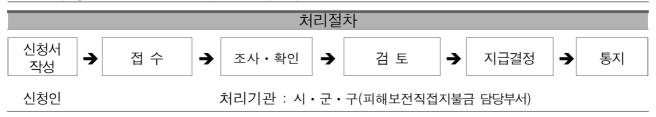
- 1. (생산 사실 확인서) 관내생산확인서 및 관외생산확인서
- 2. 2021년도 판매 기록을 증명하는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 ① 지원대상품목의 2021년에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 ② 2021년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수산종자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종자 입식 이후 출하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2021년 출하가 입증되어야 함
- ③ 지원대상품목의 계약 생산 및 판매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 ④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지원대상품목의 2021년에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⑤ 사실상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품목명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양식어업 : 입식신고서)
 - * 기타 서류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에서 품목명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할 수 있으며, 품목명이 미기재되는 경우에는 입식신고서 등 타 증빙을 함께 활용하여 지자체 인정 가능
- ** 판매추정자료에 품목명이 정확히 명시된 경우에 인정하는 것이 원칙, 어업허가 내용이 해당품목으로 특정되거나 기타 증빙을 근거로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입식신고서로 증빙하는 경우) 종자 입식 이후 출하까지 기간을 고려하여 2021년 출하가 입증, 입식시점 이후 전부폐사로 인한 지원금·보험금 등을 수령했을 경우 지원대상 제외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1.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 ① 해당 연도의 지원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 ② 해당 연도의 지원대상품목 수산종자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종자 입식 이후 출하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출하가 입증되어야 함
- ③ 해당 연도의 지원대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 ④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해당 연도의 지원대상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가 법률·규정에 따라 제출된 '어획실적 자료'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정보'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어업인이 제출한 서류로는 지원대상품목의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음≫

작성 방법

- 1. 신청인란은 신청품목 생산자의 성명 등을 적되, 생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 2. 신청내용란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 생산소재지, 생산기간, 생산규모를 적습니다.
 - 생산기간란에는 신청품목을 실제 생산한 기간(년・월・일)을 적습니다.
 - 생산규모란에는 실제 생산에 이용한 어선의 톤수(어선어업) 또는 시설면적(양식어업, 정치망 및 각망어업)을 적습니다.
- 3. 면허 등의 번호란은 해당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신고 번호를 적습니다.



[붙임 3] 관내생산 확인서

관내생산 확인서(어업)

	Y4 L14			7014 STOI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업 등록 사항		어선톤수(톤) 또는	어선·어정	당 이용규모(톤, ha	1)
	(며청.청가.시고)		시설면적(ha)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비고
11-11-11 C						
신청내용 (업종별)						
(102)						

2022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지급을 신청하는 지역의 생산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신청 지역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원양산업협회장,				
생산자단체(사단법인)의 대표				
*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의	확인을 받지 못하	하는 경우에는 신청 지역 기	거주자 2명의 확인	이 필요합니다.
신청 지역 거주자				
신청 지역 거주자				

*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준 자는 「형법」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거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포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붙임 4]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시퀀이	성명 (법인명)						년월일 [등록번]	호)			
신청인	주소						화번호				
	OH 9	 언 등록 사	한		!톤수(톤) 또는	어선·어징			이용규모	고(톤, ha	a)
		어업 등록 사항 (면허·허가·신고)				지운	지원대상품목		생산년도 (○○년○○월)		비고
신청내용 (업종별)											
(日승필)											
	피해보전직접 일 이전 해딩					청인0	미 피해브	보전직	¦접지불금	급 지원대	대상품목의
	구분		성명		생	년월일	[날짜			서명
신청 지역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원양산업협회장,											
생산지	나단체(사단법 , 수산업협동	인)의 대표	확인을 받	지 못	하는 경우에	는 신청	성 지역 기	식주 자	2명의 확	인이 필9	요합니다.
생산지 * 어촌계장	<u> </u>	인)의 대표 조합장 등의	확인을 받	지 못히	하는 경우에	는 신청	정 지역 기	거주자	2명의 확	인이 필요	요합니다.
생산지 * 어촌계장 <i>(</i>	나단체(사단법 , 수산업협동	인)의 대표 조합장 등의 지 거주자	확인을 받	지 못	하는 경우에	는 신청	성 지역 <i>7</i>	거주자	2명의 확	인이 필의	요합니다.
생산자 * 어촌계장 - - - - - - - - - - - - - - - - - - -	나단체(사단법 , 수산업협동 생산지 소재	인)의 대표 조합장 등의 지 거주자 지 거주자 인서를 허역	위로 작성히	나여 준	- 자는 「형	형법」저	네137조(-	위계0	세 의한 공		
생산자 * 어촌계장 - - - - - - - - - - - - - - - - - - -	사단체(사단법 , 수산업협동 생산지 소재 생산지 소재 을 알고도 확	인)의 대표 조합장 등의 지 거주자 지 거주자 인서를 허역 역 또는 18	위로 작성히	h여 준 바의 발	· 자는 「항 얼금) 등 불	형법」저	네137조(-	위계0	세 의한 공		
생산자 * 어촌계장 - - - - - - - - - - - - - - - - - - -	사단체(사단법 , 수산업협동 생산지 소재 생산지 소재 을 알고도 확	인)의 대표 조합장 등의 지 거주자 지 거주자 인서를 허역 역 또는 18	위로 작성 ⁵ 천만원 이 5 목포시장	h여 준 바의 발 귀하	· 자는 「항 얼금) 등 불	형법」저 불이익을	네137조(-	위계0	세 의한 공		
생산자 * 어촌계장 - - - - - - - - - - - - - - - - - - -	사단체(사단법, 수산업협동 생산지 소재 생산지 소재 을 알고도 확 년 이하의 징	인)의 대표 조합장 등의 지 거주자 지 거주자 인서를 허역 역 또는 18	위로 작성 ⁵ 천만원 이 5 목포시장	h여 준 바의 발 귀하 〈확	· 자는 「항 설금) 등 불	영법」저 불이익을 >	네137조(-	위계0	세 의한 공	무집행동	
생산지 * 어촌계장 성 * 거짓임을 처벌(5년	사단체(사단법, 수산업협동 생산지 소재 생산지 소재 을 알고도 확 년 이하의 징	인)의 대표 조합장 등의 지 거주자 지 거주자 인서를 허역 역 또는 1점 토수(톤) 또는	위로 작성호 천만원 이호 목포시장	h여 준 바의 발 귀하 〈확	· 자는 「형 설금)등 불 인 결과	흥법 _ 저를 이익을 >	네137조(-	위계0	에 의한 공 났습니다.	무집행동	
생산지 * 어촌계장 성 * 거짓임을 처벌(5년	사단체(사단법, 수산업협동 생산지 소재 생산지 소재 을 알고도 확 년 이하의 징	인)의 대표 조합장 등의 지 거주자 지 거주자 인서를 허역 역 또는 1점 토수(톤) 또는	위로 작성호 천만원 이호 목포시장	h여 준 바의 발 귀하 〈확	· 자는 「현 설금)등 불 인 결과 이상 유	흥법 _ 저를 이익을 >	네137조(-	위계0	에 의한 공 났습니다. 주요 나	무집행동	
생산지 * 어촌계장 성 * 거짓임을 처벌(5년	사단체(사단법, 수산업협동 생산지 소재 생산지 소재 을 알고도 확 년 이하의 징	인)의 대표 조합장 등의 지 거주자 지 거주자 인서를 허역 역 또는 1점 토수(톤) 또는	위로 작성호 천만원 이호 목포시장	├여 준 ├의 별 귀하 〈확	· 자는 「현 설금)등 불 인 결과 이상 유	흥법 _ 저를 이익을 >	네137조(-	위계0 수 있	에 의한 공 났습니다. 주요 나	무집행당	방해)에 의기 일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붙임 5] 관외생산 확인서

성명

(법인명)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어선톤수(톤) 어선·어장 이용규모(톤, ha) 어업 등록 사항 또는 (면허·허가·신고)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비고 시설면적(ha) 신청내용 (업종별) 2022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지급을 신청하는 지역의 생산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해당 지역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원양산업협회장. 생산자단체(사단법인)의 대표 해당 지역 거주자 해당 지역 거주자 해당 지역 거주자 ※ 해당 지역 어촌계장과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수협조합장, 원양협회장의 확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 해당 지역 거주자

관외생산 확인서(어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준 자는 「형법」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거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 지역의 경우에는 신청 지역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신청 지역 이·통장과 신청 지역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

목포시장 귀하

해당 지역 거주자

담당 공무원

해당 지역 읍·면·동의

음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목포시 공고 제 2024 -1194호

공인 등록 공고

목포시 공인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등록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유 : 조직개편에 따른 공인 등록

2. 등록일 : 2024. 8. 8.(목)

3.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 인 명	인 영	규격, 서체	비고
등록	목포시발전소주변지 역지원사업특별회계 지출원인	목포시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 계지출원인	2.0cm*2.0cm 푸른전남체	전략산업과
등록	목포시발전소주변지 역지원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인	목포시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인	1.8cm*1.8cm 푸른전남체	전략산업과

2024년 8월 8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훈령 제859호

「목포시 공무 국외여행 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8월 12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공무 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

목포시 공무 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위원 6명"을 "위원 8명"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위원은 기획청년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 경제수산환경국장, 안전도시 건설국장으로 한다"를 "위원은 기획관리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 미래전략산업국 장, 해양수산환경국장, 도시공원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 <u>6</u> 명	① 위원 <u>8</u> 명
으로 구성한다.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u>기획청년국장</u> ,	② 위원은 <u>기획관리국장,</u>
관광문화교육국장, <u>경제수산환경</u>	관광문화교육국장, <u>미래전략산업국장,</u>
<u>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u> 으로 한다.	해양수산환경국장, 도시공원국장,
	<u>안전건설교통국장</u> 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 정 안 쳙 행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공무국외여행심사의결서 공무국외여행심사의결서 (제11조제1항 관련) (제11조제1항 관련) □ 공무국외여행심사 의결사항 □ 공무국외여행심사 의결사항 여 행 자 여행기간 여행국 여 행 목 적 의 결 사 항 여행기간 여행국 여 행 목 적 의 결 사 항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목포시공무국외여행규정 제11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심사 의결 함. 목포시공무국외여행규정 제11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심사 의결 함. 년 월 일 년 월 일 직 책 직 위 성 명 <u>의 결 표 시 비 고</u> 기(의견) 부(의견) 성 명 의 결 표 시 가(의견) 부(의견) 비 고 직 책 직 위 위원장 부 시 장 위원장 부 시 장 자 치 행 정 자 치 행 정 부위원장 부위원장 복 지 국 장 복 지 국 장 기 획 기 획 위 원 청 년 국 장 관 리 국 장 관 광 문 화 위 원 관 광 문 화 교 육 국 장 교 육 국 장 경 제 수 산 위 원 환 경 국 장 미 래 전 략 산 업 국 장 안 전 도 시 위 원 건 설 국 장 해 양 수 산 위 원 환 경 국 장 도 시 공 원 국 장 안 전 건 설 위 원 교 통 국 장